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2010. 10. 20(수)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자 : 황규철 의원(찬성자 6인)

나.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10년 9월 29일
- 회부일자 : 2010년 10월 8일

다. 상정일자 : 제29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10.10.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산업경제위원회 황규철 의원)

가. 제안이유

-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복지향상과 전문인력화를 통한 경영주체로서 지역농어업 발전의 핵심인력 육성을 위해 시행 중인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13조 등)

3.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민병완)

-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용 중인 조례안의 일부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은 물론, 근거 법령인 상위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여성농어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여성농어업인단체”란 「여성농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어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자립기반과 농촌공동체 활성화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과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귀농 여성농어업인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 도지사는 귀농 여성농어업인 및 이주 여성 농어업인들을 상대로 교육과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여성농어업인”이라 함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1. “여성농어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여성농어업인단체”라 함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	2. “여성농어업인단체”란 「여성농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이라 함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생략)	4. (현행과 같음)
제3조(도지사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 ① (생략)	제3조(도지사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p>② 여성농어업인은 농업 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 농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자립기반 및 농촌공동체 활성화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p> <p>제6조(시행계획 수립 및 협조)</p> <p>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농어업인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제5조 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시행한다.</p> <p>②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6조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②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 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어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자립기반과 농촌 공동체 활성화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제6조(시행계획 수립 및 협조)</p> <p>① 도지사는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p> <p>②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 ① (생 략)</p> <p>② 제1항의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 2조제 3항의 규정에 의거 도의 규칙으로 정한다.</p>	<p>제7조(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의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의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3조(귀농 여성농어업인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 도지사는 귀농 여성농어업인 및 이주 여성 농어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 농어업인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해야 한다.</p>	<p>제13조(귀농 여성농어업인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 도지사는 귀농 여성농어업인 및 이주 여성 농어업인들을 상대로 교육과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p>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관 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농업: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업인: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어업인: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 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가목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말한다.
2. "여성어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나목에 따른 여성어업인을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이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을 말한다.
4. "여성농어업인단체"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에 의하여 농업 및 어업 생산력의 제고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및 복지 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 여성농업어인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의 목표
2.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의 기본 방향
3. 다음 각 목의 핵심 정책과제
 - 가. 농어업 경영능력 향상
 - 나.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

다. 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라.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필요한 시책

4.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財源)의 지원계획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에 따라 각각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도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의 자문을 각각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 및 시·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 또는 시·도의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도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 법인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①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소속하에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각각 둔다.

② 자문회의에는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과 관련된 전문가와 여성농어업인단체의 대표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도지사 소속하에 두는 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